

## [사 건 명] 행심 2014-24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1.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2014. 11.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교내봉사 3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11. 1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1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는데도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4 전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이나 카스상에 주고받은 글들은 피해자를 놀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4. 10. 24. 청구인의 카카오톡에 글을 올린 이유는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올린 것이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고, 그 외 상반되는 내용은 배제하고 서로 일치되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카스상에 ‘◆◆◆ 섹파 □□□ AND ♣♣♣’ 이라고 기재 함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박이 컸고, 청구인이 평소에도 고의적,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남학생들과 피해자를 엮어서 놀리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4. 일자불상 경에 피해자와 함께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 병신”, “□□□ 같은 새끼야”, “닥쳐 오징어” 라고 글을 남겼다
- 2) 청구인은 2014. 일자불상경 청구인의 카스에 “이○○은 □□□를 사랑한다” 라고 기재하거나 70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엄○○ ♡ □□□” 라고 글을 남겼다.
- 3) 청구인은 2014. 10. 24. 청구인의 카스에 “야 ◆◆◆ 섹파 □□□ And ♣♣♣ 쓴 새끼 누구야 진짜 개빡도네” 라고 올렸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는 데도 피청구인은 추가적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카톡이나 카스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되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확인한 사실, 피해자의 사실 확인서 및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제출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카톡이나 카스 상에서 피해자에게 올린 글의 경위 조사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조사는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4. 10. 24. 전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이나 카스상에 주고받은 글들은 피해자를 놀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4. 10. 24. 청구인의 카카오톡에 글을 올린 이유는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올린 것이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 10. 24. 전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이나 카스상에 기재한 글들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카톡이나 카스상에 남겨진 글인 만큼,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여겨질 수 있고, 다른 남학생과 사귀는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14. 10. 24. 청구인이 카스상에 올린 “야 ◆◆◆ 섹과 □□□ And ♣♣♣ 쓴 새끼 누구야 진짜 개빡도네”의 글은 청구인이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봉사 3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4시간은 청구인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